

# 투자권유준칙



토포앤코코리아투자자문(주)

- ※ 이 투자권유준칙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제정·운영합니다.
- ※ 이 투자권유준칙은 ‘전문투자자가 회사방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’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온라인·전화영업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 목 차

<b>I. 총칙</b> .....	
1. 목적.....	1
2. 용어의 정의.....	1
3.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.....	1
<b>II. 투자자 구분 등</b> .....	
4. 방문 목적 확인 .....	2
5. 일반·전문투자자의 구분.....	2
6. 투자자정보의 변경여부 확인 및 반영.....	3
<b>III. 투자권유</b> .....	
7. 투자권유시 유의사항.....	3
<b>IV.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</b> .....	
8.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.....	3
9. 손실보전 등의 금지.....	4
10.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.....	4
11.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.....	5

# I. 총칙

## 1. 목적

이 투자권유준칙(이하 “준칙”이라 한다)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(이하 “임직원등”이라 한다)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, 법시행령, 법시행규칙,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(이하 “관계법령등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) “투자권유”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문계약·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“포트폴리오투자”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3) “파생상품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
가. 파생상품

나.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

## 3.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

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)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II. 투자자 구분 등

### 4. 방문 목적 확인

- 1)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5. 일반·전문투자자의 구분

- 1)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.

## III. 투자자정보

### 6.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

- 1)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파악을 위하여 [별지 제1호]의 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전달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7.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

- 1)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(투자자정보 유효기간) 동안 투자자정보가

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- 2)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)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3)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.
- 4) 1)부터 3)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채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IV. 투자권유

### 8. 투자권유시 유의사항

- 1)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가.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
  - 나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  - 다.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,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.
  - 라.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.
    - (1)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
    - (2)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. 이 경우 다음의 각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      -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     -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     -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
- 라.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2)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.
- 3)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.

## V.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

### 8.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

- 1)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가.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
  - 나.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
- 2)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)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### 9. 손실보전 등의 금지

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 제103조제3항(신노후생활연금신탁, 연금신탁, 퇴직일시금신탁)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,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.

- 가.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

약속하는 행위

나.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

다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
라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

## 10.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

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1) 및 2)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,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) 및 2)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- 1) 투자자로부터 금전,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·예탁을 받는 행위
- 2) 투자자에게 금전,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,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3)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
## 11.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

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 1) 임직원등은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, 투자 경험, 투자연령, 투자위험 감수능력,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2) 회사는 1)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[별지 1]

## 전문투자자 상담보고서

○ 성함 (기관명) :

○ 상담기록

- 투자목적

- 재산상황

- 투자경험

- 투자연령

- 투자위험감수능력

- 소득수준

- 금융자산의 비중

- 위험에 대한 태도

- 기타

○ 투자자유형: 공격투자형/적극투자형/위험·수익중립형/안정추구형/안정형